Q & A

環境保全法令 이런 점이 궁금하다 〈연재Ⅳ〉

이 質疑·回信集은
'86년 12월 31일 法津 제3903号로 개정된
環境保全法의 제분야에 대하여 同法 개정 이후
'88년 3월 7일까지 環境庁에 관계기관과 민원인으로부터
질의된 사항을 庁의 관계부서가 回信한 내용으로
環境保全法令의 순서에 따라 수록한 것이다.

目 次

1. 환경영향평가
2. 배출시설
3. 배출허용기준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5.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6.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7. 방지시설의 설치
8. 공동방지시설
9. 환경기술감리
10. 배출시설의 설치조사 및 시험가동
11. 배출시설의 비정상운영에 관한 자진신고
12. 개선명령과 개선계획서
13. 배출부과금 산정방법 및 기준
14. 위반 회수별 부과계수
15. 배출부과금 부과와 행정형벌병과
16. 명령이행보고 및 확인
17. 오염물질 측정
18. 사업장의 종별구분
19. 배출시설 관리인
20. 비산분진규제
21. 방지시설업
22.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23. 경과 조치

13. 배출부과금 산정방법 및 기준

가. 排出賦課金 算定方法 및 基準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서울 環境 31814-471('87.8.19)

回信 : 水管 31630-8369('87.9.7)

2. 質疑內容

排出賦課金 賦課에서 汚染物質 排出期間 算定時 汚染物質 採取日의 算入 여부?

3. 回信內容

算入하지 아니한다.

4. 理 由

汚染物質 排出期間은 汚染物質을 排出하기 始作한 날(排出하기 始作한 날을 알 수 없을 때에는 汚染物質 採取日)로 부터 改善(移轉·操業停止·閉鎖)命令 履行完了日까지로 하돼, 그 期間의 算定은 民法의 規定에 의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므로 汚染物質 採取日은 算入하지 않는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施行令 第17條의9, 民法 第157條

나. 排出賦課金 算定時 休業期間의 算入 與否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 釜山 指道31720-1246('87.9.4)

回信 : 水管 31632-8902('87.9.11)

2. 質疑內容

排出賦課金 算定期間中에 管割稅務署에 休業申告를한 경우 등의 휴업기간을 賦課金 賦課日數에 包含시켜 數定하여야 하는지?

3. 回信內容

客觀的으로 證明되는 경우에는 算定期間에서 除外하여야 한다.

4. 理 由

排出賦課金은 排出許容期準을 超過하는 汚染物質을 排出하면서 操業을 하는 경우에 賦課하는 것임으로 排出期間의 算定은 事實上 操業한 日數를 根據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休業등 事實上 操業行爲를 하지 않는 事實이 客觀的으로 입증될 수 있는 書類가 提出되는 경우에는 이를 確認하여 排出賦課金을 還給하여야 한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19條의 2, 同法 施行令 第17條의 9 및 第17條의 13

다. 非正常稼動時의 排出賦課金 賦課可能 與否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 全南 環境 31824-30550('87.10.14)

回信 : 水管 31814-10911('87.11.16)

2. 質疑內容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고의적으로 非正常稼動하므로서 오염물질이 排出許容基準을 超過하였을 경우 防止施設의 運轉未熟으로 인한경우와 같이 改善命令을 하고 排出賦課金을 賦課할 수 있는지?

3. 回信內容

고의적 排正常稼動으로서 改善期間을 指定할 수 없는 경우에는 改善命令을 할 수없으며 排出賦課金도 賦課할 수 없다. 그러나 排出 및 防止施設의 故障·放置 등인 경우에는 改善期間을 指定할 수 있으므로 改善命令을 하고 排出賦課金을 賦課할 수 있다.

4. 理 由

改善命令은 改善할 內容(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의 設置 改善·代替 其他 必要한 措置)과 改善期間을 指定하여 命令하여야 하는바 고의적인 非正常稼動의 경우(排出 및 防止施設의 故障·放置인 경우 除外)에는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은 正常이므로 改善할 內容을 指定할 수 없고, 주로 藥品費나 電力費 등을 節約하기 위하여 防止施設을 稼動하지 아니한 것 등이므로 正常的으로 稼動時는 排出許容基準의 準守가 可能하기 때문에 改善期間을 指定할 수 없는바 이에 따라 排出賦課金도 賦課할 수 없다. 따라서 고의성 비정상가동자중 改善命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許可取消와 고발등 直接 規制措置를 하여야 할 것이며, 排出 및 防止施設의 故障·放置인 경우에는 同施設의 改善·修理등에 必要한 期間이 所要되므로 改善期間을 指定할 수 있고 改善할 內容도 指定할 수 있으므로 排出賦課金 賦課와 行政刑罰을 併科할 수 있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17條, 同法 第19條의 2, 同法 第20條

라. 閉鎖命令을 받고 계속 操業하는 者에 對한 排出賦課金 追徵與否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 서울 環境 31814-471('87.8.19)
回信 : 水管 31630-8369('87.9.7)
2. 質疑內容
閉鎖命令을 받은 事業者가 閉鎖命令期間內 閉鎖하지 않고 계속 操業時 排出賦課金의 追徵方法은?
3. 回信內容
閉鎖命令을 받고도 계속 操業할 경우에는 環境保全法 第66條의 5에 의거 고발조치하고 閉鎖命令 履行을 促求한 후 閉鎖命令履行完了를 確認한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追徵 또는 還給하여야 한다.
4. 理 由
排出賦課金 算定의 基礎가 되는 汚染物質 또는 排出物質의 排出期間이 달라지게된 경우에는 달라지게된 期間동안의 排出賦課金은 閉鎖命令의 履行狀態를 確認한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調整賦課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임.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施行令 第17條의 13

14. 위반회수별 부과계수

가. 最初 違反時의 違反回數適用 및 違反回數別 賦課係數 算定方法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 京畿 환위 31813-4015('87.8.8)
回信 : 水管 31631-8001('87.8.13)
2. 質疑內容
環境保全法施行令의 改正에 따라 '87.6.3 부터 適用하는 違反回數 適用에 있어 처음 違反하였을 경우의 賦課係數 算定은?
3. 回信內容
100分의 105이다(自進申告者의 경우에는 100分의 100이다.)
4. 理 由
違反回數別 賦課係數는 違反이 전혀 없는 경우를 100/100으로 하고 105/100를 乘하여 算定한다. 그럼으로 처음 違反했을 경우의 違反回數別 賦課係數는 105/100가 된다. 違反이 없는 경우라함은 違反의 범주에 해당되는 命令을 받아본 일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實質的으로 排出賦課金 貸擔을 한 경우가 있는지 與否는 불문한다. 따라서 自進申告를 通하여 賦課金을 納付한 경우는 違反이 없는 경우에 該當한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施行令 第17條의 10

나. 改善完了報告 確認結果 同一項目 또는 새로운 項目의 汚染物質이 배출허용기준을 超過한 경우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 京畿 환위 31813-4878('87.9.23)
回信 : 水管 31632-9626('87.10.5)
2. 質疑內容
改善命令을 받은 事業者의 改善完了報告에 依하여 汚染物質을 採取, 分析한 結果 同一項目 또는 새로운 項目의 汚染物質이 排出許容基準을 超過한 경우의 排出賦課金 算定期間은?
3. 回信內容
새로운 項目일 경우 :새로운 項目에 對한 排出賦課金을 賦課하여야 한다.
同一項目일 경우 : 調整(追加) 賦課하여야 한다.
4. 理 由
排出賦課金은 排出許容基準 超過汚染物質單位로 賦課하므로 새로운 汚染物質이 排出許容基準을 超過한 경우에는 當初 違反과는 다른 違反이므로 改善命令을 하여야 하며, 汚染物質 排出期間은 確認 檢査를 爲한 汚染物質 採取日 翌日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最初 違反時와 동일 분야일 경우에는 위반회수별 賦課係數를 1回 더 算入하여야 한다. 다만, 同一 汚染物質인 경우에는 事實上 改善完了된 것이 아니므로 改善命令書上의 改善期間內에 改善할 수 있는 경우에는 改善促求를 하고, 排出賦課金은 改善計劃上 改善完了豫定日부터 改善命令書上의 改善完了指定日까지는 追

徵하고, 改善命令書上의 改善完了指定日까지 改善하지 못한 경우에는 1차 改善命令書上의 改善完了指定日 翌日에 2次 改善命令하고 이에따라 2次 排出賦課金을 賦課하여야 한다. 이 경우 違反回數는 1回 더 算入하여야 한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施行令 第17條의 8

다. 改善完了 履行報告 確認結果 再違反者 處理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 대구 環境 31813-20601('87.10.21)

回信 : 水管 31632-10323('87.10.24)

2. 質疑內容

自進申告者의 改善完了報告와 改善命令을 받은 事業者을 改善完了履行報告에 依하여 當局에서 실지確認 檢査한 結果, 報告 또는 改善命令의 對象이된 同一 汚染物質이 계속하여 排出許容基準을 超過하고 있는 경우 다시 改善命令을 하여야 하는지?

3. 回信內容

自進申告者는 改善命令을 하여야 하고 改善命令을 받은 事業者는 改善命令書上의 改善期間內 改善할 수 있는 경우에는 改善促求를 하고 改善命令書上의 改善完了指定日까지 改善하지 못한 경우에는 2次 改善命令을 하여야 한다.

4. 理 由

自進申告의 基本要件은 申告者의 誠實性이므로 誠實性이 缺如된 自進申告는 그 要件을 喪失하였으므로 無申告者의 경우와 같은 違反으로 보아 改善命令을 하고, 無申告者의 경우에는 最初 改善命令書上의 改善期間內에 改善工事의 早期完了를 促求하는 것이 現行法 테두리內에서 가장 合理的인 措置이며 同 期間內에 改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次 改善命令을 하여야 한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17條, 同法 第19條의 2, 同法施行令 第17條의 13, 同法 施行規則 第71條(別表 19)

15. 배출부과금 부과와 행정형벌 併科

가. 排出許容基準違反者에 對한 排出賦課金 및 行政刑罰 併科可能與否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 全南 환경 31824-30550('87.10.14)

回信 : 水管 31814-10911('87.11.16)

2. 質疑內容

防止施設의 運轉未熟等으로 인하여 汚染物質이 排出許容基準을 超過하였을 경우 排出賦課金등 行政處分과는 別度로 環境保全法 第66條의 規定에 의한 處罰對象인지?

3. 回信內容

處罰對象이 될 수 있다.

4. 理 由

排出賦課金은 排出許容基準을 超過하여 汚染物質을 排出한데 대한 금전적 負擔이고, 行政刑罰은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자에 對한 罰이라는 點에서 着異가 있는 바, 排出賦課金의 賦課와는 別度로 環境保全法第66條의 規定에 의한 處罰對象이 된다 할 것이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16條의 2, 同法 第66條 第1項

나. 排出賦課金이 賦課된 無許可排出施設에 對한 告發與否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 서울 環境 31814-471('87.8.19)

回信 : 水管 31630-8369('87. 9. 7)

2. 質疑內容

閉鎖命令을 받은 無許可排出施設에 對하여 일정기간 排出賦課金을 賦課한 경우에도 閉鎖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경우 告發이 可能한지?

3. 回信內容

告發할 수 있다.

4. 理 由

排出賦課金은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者 스스로가 排出許容 基準以內로 汚染物質을 排出하도록 유도하는 制度로서 當該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處理費用에 상당하는 金額을 賦課하는 負擔金制度이므로 排出賦課金을 賦課하였다 하더라도 排出施設設置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조업한 者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19條의 2, 同法 第66條

다. 冷却水 再利用施設의 故障으로 因한 放流時 賦課金 및 罰則適用 該當與否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 民願人

回信 : 水管 31630-8669('87.9.4)

2. 質疑內容

廢水處理를 全量回數하여 工業用水(冷却水)로 再使用中 機械故障으로 廢水處理水를 放流하였을 때 無斷放流에 該當하는지? 排出賦課金 賦課對象이 되는지?

3. 回信內容

排出賦課金 賦課對象 와 排出 및 防止施設의 非正常運營者로 處罰할 수 있다.

4. 理 由

排出施設設置許可를 받은자가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排出許容基準以下로 正常運營하여야 한다. 排出施設의 故障으로 排出되는 오염물질을 배출許容基準以下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自進申告後 當該 排出施設을 가동할 수 있다. 自進申告를 한 경우에는 非正常運營者로 告發하지 않고 排出賦課金만 賦課하지만 申告없이 非正常運營할 경우에는 刑事處罰과 併行하여 排出賦課金을 賦課하여야 한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16條의 2, 同法 施行令 第17條의 5, 環境保全法 第66條

라.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 非正常稼動事例에 따른 業務處理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 釜山 지도 31720-516('88. 2.13)

回信 : 大管 31720-2301('88. 3. 7)

2. 質疑內容

○ 防止施設 老朽와 一部 故障等으로 汚染物質이 一定한 排出口를 거치지 않고 排出될 경우에는 汚染度測定이 不可能 하거나 또는 測定한다 하더라도 信賴性이 결여되는 바, 이럴경우 汚染度 測定을 하지 않았을 時에 防止施設의 非正常稼動으로 볼 수 있는지 與否?

○ 排出業所 指導·點檢時 防止施設의 正常稼動 與否를 確認하기 위하여 防止施設에 附着된 積算電力計 確認結果 防止施設 非正常稼動을 確認하였을 때 檢體有無에 關係없이 措置할 수 있는지 與否?

○ 하나의 排出施設에 2個의 排出口를 設置하여 놓고 1個의 排出口에는 防止施設을 設置하여 稼動하고, 1個의 排出口는 防止施設을 設置하지 않고 運營할 경우 防止施設이 設置되어 있지 않은 排出口를 秘密排出口로 볼 수 있는지 또는 防止施設 未設置로 보는지 與否?

○ 排出業所 指導·點檢時 防止施設을 稼動하지 않고 있을 경우 排出許容基準 招過與否의 確認없이 단지 防止施設을 稼動하지 않은 것만으로 法第16條의 2 第1項에 의한 非正常稼動으로 告發措置할 수 있는지 與否?

3. 回信內容

○ 防止施設老朽와 一部 故障等으로 汚染物質이 일정한 排出口를 거치지 않고 排出될 경우에는 防止施設 非正常稼動으로 볼 수 있으며, 汚染度測定이 곤란할 경우에는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運營에 關하여 環境汚染公正試驗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測定이 可能하도록 조치한 후 汚染物質을 採取·檢査하여 檢査結果에 따라 防止施設老朽 또는 一部 故障에 對한 改善, 代替期間까지 排出期間으로 算定하여 排出賦課金의 賦課, 行政處分 및 行政刑罰을 併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防止施設에 附着된 積算電力計 確認結果 防止施設非正常으로 確認된 경우에는 檢體有無에 關係없이 防止施設 非正常稼動으로 告發措置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汚染物質을 採取·檢査하여 排出許容基準 以內인 경우에는 行政處分(警告措置) 및 行政刑罰을 併科하고 排出許容基準을 超過한 경우에는 排出賦課金 賦課, 行政處分 및 行政刑罰을 併科할 수 있다.

○ 排出施設 設置許可關係書類와 對照確認하여 防止施設이 設置되어 있지않은 排出口가 許可事項에 防止施設을 設置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防止施設 未設置로, 許可事項에 포함되어

있지않은 경우에는 秘密排出口로 볼 수 있다.

ㅇ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이 동시적으로 稼動되어야 할 구조에서 防止施設을 稼動하지 않고 있다면 非正常稼動으로 보아 行政處分 및 行正刑罰을 併科할 수 있으며, 排出許容期準 超過與否를 確認하여 排出許容基準을 超過하였을 때는 排出賦課金賦課, 行政處分 및 行政刑罰을 併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 명령의 이행보고와 확인

가. 移轉命令受命業所가 一部施設을 移轉하지않은 경우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 경기 환위 31813-3891('87.7.13)

回信 : 水管 31720-7330('87. 8. 7)

2. 質疑內容

移轉命令을 받은 業所가 汚染濃度를 加重시키는 工程 및 施設은 移轉하고 工程의 約10%程度의 排出施設을 移轉하지 아니하고 이 殘餘施設에 對하여 環境技術監理를 받아 水質汚染을 저하시키고자 할 경우 移轉命令을 履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回信內容

移轉命令의 履行으로 볼 수 없다.

4. 理 由

事業場에 對한 移轉命令은 當該 事業場의 位置에서의 改善命令을 하여도 汚染物質을 排出許容基準以下로 排出할 수 없다고 判斷될 때 期間을 정하여 명하는 것이며, 이는 排出施設全體를 對象으로 事業場의 移轉을 명하는 것으로서 移轉命令을 받은 現工場의 位置에 일부의 排出施設을 存續시키고 移轉한 경우는 移轉命令 事項을 履行한것으로 볼 수 없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19條

나. 閉鎖命令時 閉鎖期間賦與 可能與否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 서울 環境 31814-471('87.8.19)

回信 : 水管 31630-8369('87.9.7)

2. 質疑內容

無許可 排出施設에 對하여 즉시 閉鎖命令을 한 경우 최초 排出賦課金 賦課時의 종기산정은?

3. 回信內容

閉鎖命令 履行完了豫定日이다.

4. 理 由

無許可 排出施設에 對한 賦課金 算定期間은 汚染物質이 排出되기 시작한 날(排出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閉鎖命令의 원인이 되는 汚染物質 採取日)로 부터 閉鎖命令의 履行完了豫定日까지로 算定한다. 閉鎖命令 履行完了豫定日은 閉鎖命令書의 送達期間等을 감안하여 合理的으로 定하여야 할 것이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21條, 同法 施行令 第17條의 9

〈다음호에 계속〉

UNEP '88年 제16회 世界環境의 날 주제

환경보호, 지속적인 개발 및 대중의 참여

(Environment Protec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ublic Participation)